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대안)

검 토 보 고

I. 주요내용

- 중대범죄수사청 수사대상 범죄를 중대범죄와 공소청 소속 공무원 · 경찰공무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소속 공무원 · 법원 소속 공무원이 범한 범죄 등으로 하고, 중대범죄는 「형법」상 내란·외환죄, 사기·횡령죄 등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등에 규정된 범죄로 함(안 제2조 및 제4조).
- 중대범죄 수사 등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중대범죄수사청을 두고, 행정안전부장관은 일반적으로 중대범죄수사청장과 그 소속 직원을,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는 중대범죄수사청장만을 지휘 · 감독하도록 함(안 제3조 및 제6조).
- 중대범죄수사청에 1급부터 9급까지의 수사관을 두고, 수사관은 특정직공무원으로 하며, 중대범죄 등의 수사에 있어서 「형사소송법」 제19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직무를 수행하도록 함(안 제12조, 제16조 및 제17조).

- 중대범죄수사청 소속 공무원은 다른 수사기관 소속 공무원과 서로 협력하도록 하고, 중대범죄수사청장 또는 지방중대범죄수사청장이 중대범죄수사청의 범죄수사와 중복되는 다른 수사기관의 범죄수사에 대하여 이첩을 요청하거나 다른 수사기관에 사건을 이첩할 수 있도록 함(안 제43조).
- 사건관계인은 수사 등이 적정성·적법성을 현저히 갖추지 못하였다고 판단하는 경우 그 수사 등을 수행한 중대범죄수사청 또는 지방중대범죄수사청에 심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심의를 위하여 중대범죄수사청 또는 지방중대범죄수사청에 수사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며, 수사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0명 이상 20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함(안 제44조).

II. 검토의견

1. 중대범죄 정의의 불명확성(안 제2조제1호마목)

안 제2조제1호는 각 목에서 “중대범죄”를 정의하고 있는바, 그중 마목은 산업기술보호법, 부정경쟁방지법상 기술유출범죄와 정보통신망법의 정보통신망 침해 등 사이버범죄를 중대범죄로 규정하려는 취지임.

그러나, 마목은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6조, 제36조의2, 제37조, 제38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8조의2, 제18조의3, 제18조의4,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제1항제11호에서 제14호 및 제2항, 「형법」 제356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의 범죄 중 기술유출 등 국가기반시설 공격에 해당하는 사이버범죄”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음.

제 정 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대범죄”란 다음 각 목의 범죄를 말한다. 가. ~ 라. (생략) 마.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6조, 제36조의2, 제37조, 제38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8조의2, 제18조의3, 제18조의4,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제1항제11호에서 제14호 및 제2항, 「형법」 제356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의 범죄 중 <u>기술유출 등 국가기반시설 공격에 해당하는 사이버범죄</u> 바. ~ 사. (생략)

검토하면, “기술유출 등 국가기반시설 공격에 해당하는 사이버범죄”라는 표현은 그 의미가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산업기술보호법, 부정경쟁방지법 해당 규정은 기술유출범죄를, 정보통신망법 해당 규정은 정보통신망 침해행위 등을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기술유출 등 국가기반시설 공격에 해당하는 사이버범죄”의 표현은 개별법과의 관계에서 구체적 구성요건과의 대응관계가 불명확하여, 중대범죄 수사의 범위가 해석에 따라 좌우될 우려가 있을 것으로 보임.

또한, 「형법」 제356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의 범죄의 경우 업무상 횡령·배임 및 해당 범죄에 대한 가중처벌 규정으로, 국가기반시설 공격에 해당하는 기술유출범죄나 사이버범죄와의 직접적인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미 같은 내용을 제정안 같은 호 가목 및 나목에도 규정하고 있음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¹⁾

2. 수사심의위원회 관련 문구 명확화 등(안 제44조)

안 제44조에 따르면 중대범죄수사청 또는 지방수사청에 사건관계인이 심의를 신청한 사건에 대한 심의, 수사관의 상관에 대한 이의제기의

1) 1. “중대범죄”란 다음 각 목의 범죄를 말한다.

가. 「형법」 제2편 제1장의 죄, 제2장의 죄, 제39장의 죄, 제40장의 죄, 제122조, 제124조부터 제133조, 제141조, 제225조, 제227조, 제227조의2, 제229조(제225조, 제227조 및 제227조의2의 행사죄에 한정한다), 「변호사법」 제111조, 「정치자금법」 제45조, 「국가정보원법」 제21조 및 제22조,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의 범죄

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조, 제4조, 제5조, 제6조, 제8조, 제8조의2, 제11조의 범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4조부터 제8조, 제9조까지의 범죄

심의 등을 하기 위하여 수사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음.

수사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0명 이상 20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중대범죄수사청장 및 지방중대범죄수사청장이 사법제도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을 가진 사회 각계의 전문가 중에서 위촉함.

이 때, 안 제44조제4항은 수사심의위원회 위원장을 “중대범죄수사청장 또는 지방중대범죄수사청장이” 각 수사심의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선출”하는 것으로 규정하는바, 법률용어로서 선출(選出)은 총회나 선거 등에서 여럿 가운데 골라낸다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음.

또한, 2026. 3. 17. 제433회국회(임시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의결된 「공소청법안」 등²⁾의 대안은 사건심의위원회 위원장을 위원중에서 호선(互選)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안 제44조제6항을 수사심의위원회 회의가 구성될 경우 위원장을 위원 중에 호선하도록 하고, 그에 따라 일부 조문을 정비하는 수정의견을 행정안전부와 협의하여 마련함.

[수정의견]

제 정 안	수 정 의 견
제44조(수사심의 등) ①·② (생략)	제41조(직무수행 및 이의제기) ①·

2) 박은정의원 대표발의 「공소청법안」(의안번호 제2203354호), 김용민의원 대표발의 「공소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제2210728), 정부 제출 「공소청법안」(의안번호 제「공소청법안」(의안번호 제2203354호) 등

③ <u>수사심의위원회는</u> <u>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0명 이상 20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중대범죄 수사청장 및 지방중대범죄수사청장이 사법제도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을 가진 사회 각계의 전문가 중에서 위촉한다.</u> ④ <u>수사심의위원회 위원장은</u> <u>중대범죄수사청장 또는 지방중대범죄수사청장이 각 수사심의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u> ⑤ <u>수사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새로 선출한 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한다.</u> ⑥ <u>수사심의위원회의 회의는</u> <u>위원장과 회의 시마다 무작위 추첨을 통하여 선정하는 위원 15명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 10명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u>	② (제정안과 같음) ③ <u>수사심의위원회는</u> ----- ----- ----- ----- -----. ④ <u>수사심의위원회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u> ⑤ <u>수사심의위원회의 회의는</u> <u>위원장과 회의 시마다 무작위 추첨을 통하여 선정하는 위원 15명으로 구성한다.</u> ⑥ <u>제5항에 따라 구성된 수사심의위원회 회의의 위원장은</u> <u>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고,</u> ----- ----- -----개의(開議)하며,----- -----.
---	--

3. 검찰청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임용특례(부칙안 제4조)

부칙안 제4조에서는 종전 검찰청 소속 검사 및 직원을 중수청에 배치하는 방법을 규율하는 특례조항을 두어, 중수청 임용을 희망하는 검

찰청을 공무원을 대상으로 경력경쟁채용시험 등의 방법으로 신규 임용하는 절차를 명시하고 있음. 이 부분은 「공수청법안」의 부칙과 함께 논의되어야 할 부분으로서 「공수청법안」의 부칙이 수정되는 경우 함께 수정되어야 함.

4. 기관의견: 법원행정처

그 밖에, ① 안 제2조제1호사목에서 “중대범죄”의 범위에 ‘「형법」 제123조의2에서 정한 범죄’³⁾를 포함하는 내용과 관련하여, 법왜곡죄는 법관의 직무상 범죄에 해당하므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 범위가 될 가능성이 높은바, 다수의 수사기관의 같은 혐의로 중첩적 수사를 개시할 경우 법관의 직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고, ② 제2조제2호가목이 “중대범죄등”을 “법원 소속 공무원”이 재직 중 저지른 범죄를 포함하는 내용과 관련하여서는, 법원 소속 공무원의 직무 관련 여부와 무관히 모든 범죄를 ‘중대범죄’로 보는 것은 과도한 측면이 있고, 여러 수사기관의 중복수사 개시 가능성이 있어 결과적으로 국민의 재판받을 권

3) 「형법」 제123조의2(법왜곡) 형사사건의 재판에 관여하는 법관, 공소를 제기하거나 유지하는 검사 또는 범죄수사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는 자가 타인에게 위법 또는 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재판 또는 수사 중인 형사사건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1. 법령의 적용 요건이 충족되지 아니함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거나, 적용되어야 할 법령임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지 아니하여 의도적으로 재판 및 수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 다만, 법령 해석의 합리적 범위에서 이루어진 재량적 판단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된 증거를 그 사정을 알면서 재판 또는 수사에 사용한 경우
3. 폭행, 협박, 위계, 그 밖의 방법으로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하거나, 적법한 증거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알면서도 범죄사실을 인정한 경우

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법원행정처의 의견이 있었음.

그 밖에 개정안의 체계·자구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경미한 자구 수정 외에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보았음(주서본 참조).

(수석전문위원 심 정 희)